## 직 제 규 정

- 제정 2002. 1.22 개정 2002. 2.27 개정 2003. 2.18 개정 2004. 2.27 개정 2005. 2. 2 개정 2006. 2. 2 개정 2006. 2.16 개정 2007. 2.15 개정 2008. 1.29 개정 2008. 4.24 개정 2008. 11. 25 개정 2009. 03. 31 개정 2010. 01. 21 개정 2011. 01. 19 개정 2012. 01. 26 개정 2013. 02. 26 개정 2014. 02. 21 개정 2015. 02. 13 개정 2015. 12. 23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홍원(이하 "기정원"이라 한다)의 조 직과 직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범위)** 기정원의 직제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3조(원장) ① 원장은 기정원을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② 원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한 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이사로서의 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.(개정 2003. 2. 18)

- 제4조(조직) ① 기정원에 감사팀, 기획조정본부, R&D혁신본부, 성장기술평가본부, 협력기술평가본부를 두며 기획조정본부에 기획관리부, 경영지원부, 전략경영팀을 두고, R&D 혁신본부에 R&D기획부, 성과혁신부, 사후관리팀, 정보화운영팀을 두고, 성장기술평가본부에 혁신기술평가부, 창업기술평가부, 수도권평가부를 두고, 협력기술평가본부에 융합기술평가부, 산학연기술평가부, 기술개발지원부를 두며, 그 조직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본부장은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할 수 있다.(개정 2002. 2. 27)(개정 2003. 2. 18)(개정 2004. 2. 27)(개정 2005. 2. 2)(개정 2006. 2. 2)(개정 2012. 1. 26)(개정 2013. 2. 26)(개정 2014. 2. 21)(개정 2015. 2. 13)(개정 2015. 12. 23)
  - ② 원장은 기정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조직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  - ③ 원장은 상시 수행업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(개정 2012. 1. 26)
- 제5조(직급 및 정원) ① 기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  - ② 원장은 기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6조(부설기구) ① 기정원의 특정업무 및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및 사업단 등 부설기구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7조(업무분장) 기정원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.
- 제8조(권한의 위임) ① 원장은 기정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.

**제9조(시행요령)** 원장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(2002. 1. 2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2. 2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2. 1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2. 2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2. 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2. 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2. 1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2. 1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. 2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4. 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1. 2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1. 2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. 1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, 요령, 지침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, 요령, 지침에서 구 직제규정의 조직명칭이나 직급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조직명칭이나 직급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구 직제규정의 기능직 직급은 현행 일반직 4급 직급으로 통합한다.

부 칙(2012. 1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, 요령, 지침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, 요령, 지침에서 구 직제규정의 조직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조직명 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3. 2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, 요령, 지침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, 요령, 지침에서 구 직제규정의 조직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조직명 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4. 2. 2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2. 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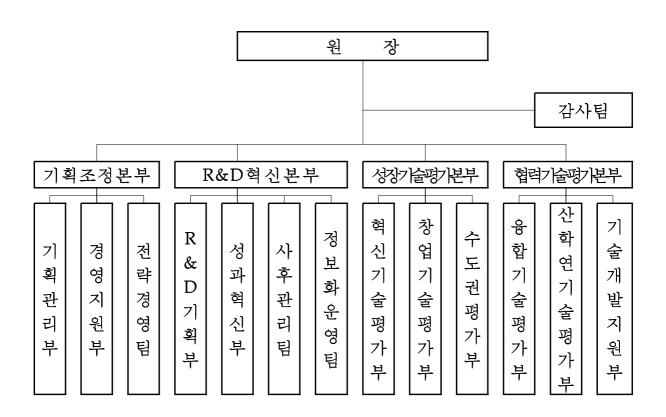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2. 2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개정 2004. 2.27)(개정 2005. 2. 2)(개정 2006. 2. 2)(개정 2006. 2.16)(개정 2008. 1. 29)(개정 2008.11.25)(개정 2011. 1.19)(개정 2012. 1. 26)(개정 2013. 2. 26)(개정 2014. 2. 21)(개정 2015. 2. 13)(개정 2015. 12. 23)

## 조 직 도



[별표 2] (개정 2005. 2. 2)(개정 2006. 2. 2)(개정 2007. 2. 15)(개정 2008. 1.29)(개정 2008.4.24)(개정 2009.3.31)(개정 2010. 1. 21)(개정 2011. 1.19)(개정 2012. 1. 26)(개정 2013. 2. 26)(개정 2014. 2. 21)(개정 2015. 2. 13)(개정 2015. 12. 23)

## 정 원 표

(단위: 명)

직	급	상근임원	1급	2급	3급	4급	총 계
정	원	1	4	12	41	57	115

[별표 3] (개정 2004. 2.27)(개정 2005. 2. 2)(개정 2006. 2. 2)(개정 2006. 2. 16)(개정 2008. 1. 29)(개정 2008.11.25)(개정 2010. 1. 21)(개정 2011. 1.19)(개정 2012. 1. 26)(개정 2013. 2. 26)(개정 2014. 2. 21)(개정 2015. 2. 13)(개정 2015. 12. 23) 업무분장표

본부	부/팀	업 무 분 장(안)	
	감사팀	<ul> <li>감사</li> <li>정기감사, 특별감사, 일상감사</li> <li>감사원 및 중기청 감사 수감 총괄</li> <li>청렴도 및 반부패</li> <li>반부패, 공직기강, 청렴도 조사 대응 등 윤리경영 총괄</li> <li>감사원, 권익위 등 감사 및 반부패 관련 기관 대응 총괄</li> </ul>	
	기획관리부	■ 조직운영 및 경영기획	
기획조정 본부	경영지원부	■ 인적자원관리 - 채용, 전보, 승진, 파견인력,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 - 직원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■ 노무관리 - 노사협의회 운영 -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■ 회계·보수·구매·계약 관리 - 지출, 세무, 회계결산, 4대 보험, 급여, 복리후생, 계량관리 - 계약, 구매, 자산관리 ■ 총무 및 사옥관리 - 시설보안, 복무관리, 문서관리, 차량관리, 원장실 지원	
	전략경영팀	■ 기관 및 기관장 경영전략 관리  - 중장기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 - 기관장 성과협약과제 관리  - 정부3.0 관리  ■ 기관 및 부서 성과관리  -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 - 부서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평가(조직)  ■ 기관 홍보 및 고객만족활동  - 기관·사업 등 언론 보도 및 홍보 총괄  - 고객만족 역량강화, 대내외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개선, 사회공헌  ■ 내부소통, 조직문화혁신	

본부	부/팀	업 무 분 장(안)		
R&D 혁신본부	R&D기획부	● 중소기업R&D지원사업 기획 총괄 - R&D지원사업 발굴, 개편 등 기획 총괄 - 성과목표·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, 성과조사 및 분석 - 성과평가(자체, 상위) 대응 총괄 • R&D 평가관리체계 기획 - 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, 제도개선 등 기획 총괄 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규정 제·개정 총괄 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규정 제·개정 총괄 - 중소기업P&D 정책교류회 운영 • 관계기관 및 대외 대응 총괄 - 국가과학심의위원회, 미래부 등 관계기관 대응 총괄 - 외부기관 요구자료 대응 총괄 - 외부기관 요구자료 대응 총괄 - R&D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설명회 • 본부 업무총괄 및 본부 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의 조정 • 중소기업R&D 정책연구 -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 -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 - 중소기업 신기술 동향 조사·분석·확산 - 중소기업 R&D지원사업 통계 및 현황관리 • 중소기업R&D 성과확산 - R&D지원성과 발굴 및 확산 - 기술시업화 자금연계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- 기술로드맵 등 유망기술 발굴 - 정책포럼 운영 •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• 평가위원 Pool, 교육, 전문심사역 양성 등 평가위원 관리 • 온라인구매지원 사업관리		
		■ R&D콜센터 운영 ■ 사업비 정산금·환수금 및 기술료 관리 총괄		
	사후 관리팀	■ 문제과제 대응 총괄 - 전문위원회 운영, 제재조치, 특별점검 - 제재부가금 관리 - 법적 조치 및 소송대응		
	정보화운영팀	■ 기관 정보시스템(원내정보시스템, R&D관리시스템 등) 운영·유지관리 ■ 중소기업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·유지관리 ■ 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		

본부	부/팀	업 무 분 장(안)	
	혁신기술 평가부	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■ 시장창출형기술개발지원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■ 본부 업무총괄 및 본부 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의 조정	
성장기술 평가본부	창업기술 평가부	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■ R&D기획역량혁신지원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■ 적합업종기업기술력향상기술개발사업 평가·관리	
	수도권 평가부	■ 본부내 수도권 소재 기업 과제 평가 ■ 서울평가장 관리	
	융합기술 평가부	│ ■ 상용화기술개발지원사업 기획·평가·관리	
협력기술	산학연 기술평가부	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기획·평가·관리	
평가본부	기술개발 지원부	■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■ 중소·중견기업파트너십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■ 재창업기업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평가·관리 ■ 미래전략상품디자인개발사업 평가·관리 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■ 정보화수준평가 및 정보화 관련 조사연구, 정책개발 ■ 정보화경영체제 표준모델의 개발, 보급, 확산 및 부합화 지원	